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7호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불법촬영기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릉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등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